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및 관련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안내를 받는다.

주 소	대구 남구 명덕로 72, (대명동) 1~3층		
연 락 처	053-254-3200	이 메 일	dmcare3200@naver.com
팩스번호	053-254-3020	홈페이지	www.대명요양센터.com

◆ 방문요양사업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 등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겹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이용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이용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이용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겔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목적

기관의 운영 목적을 바탕으로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②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시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로 한다.
-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시
를 즉시 반영한다.

■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①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산정지침에 따라 법정 본인일부 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 ②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년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하여 이용자는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 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간식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 부담금	일반(15%)	376,930	349,680	229,230	211,450	181,330
	감경(9%)	226,160	137,530	137,530	126,870	108,800
	감경(6%)	150,770	139,870	91,690	84,580	72,530

■ 이용료의 납입 절차

- ① 이용자의 서비스 당월 이용료는 이용시작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이용 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 월(다음 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계좌번호 : 아이엠뱅크(504-10-407194-3), 대명요양센터(배지연)

-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을 전액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
6.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②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㉔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에 관한 의무

㉕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㉖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해지

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㉒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때

㉓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운영 규정 제7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배상책임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단,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 | | | |
|---------------|-------------|--------------|
|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2. 영업배상책임보험 | 3. 자동차 종합보험 |
|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5. 화재배상책임보험 |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 면책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급여제공직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고의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②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외는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2) 면책 범위

-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② 센터 및 직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이용자(보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⑤ 기타 배상관련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